

국가재정 갉아먹고 국민의 터전 복구 방치한 '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' 세무조사 실시

1 세무조사 추진배경

-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 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검증을 실시해 오고 있다.
 - 특히 유령업체를 동원한 부정입찰행위는 형사상·행정상 제재와 별개로 세무상 위법·탈루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입찰로 경제적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해야 근절할 수 있으므로
 - 영세하다는 이유로 줄곧 세무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공입찰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.
- 이에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대여하는 산림기술자 등이 관행적으로 결탁해온 대표적인 부정입찰 사례인 '산불 카르텔'에 대해 5월부터 검증에 돌입하여,
 - 최근 6년간 조달청 입찰공고 내역상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의 대표자, 전화번호 등 사업자 기본사항을 토대로 5,331개 업체를 추출하고,
 - 이 중 낙찰금액 합계 10억 원 이상인 13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,
 -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,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(유령업체 41개)를 대상으로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다.

□ 조사대상업체들의 부정입찰 행태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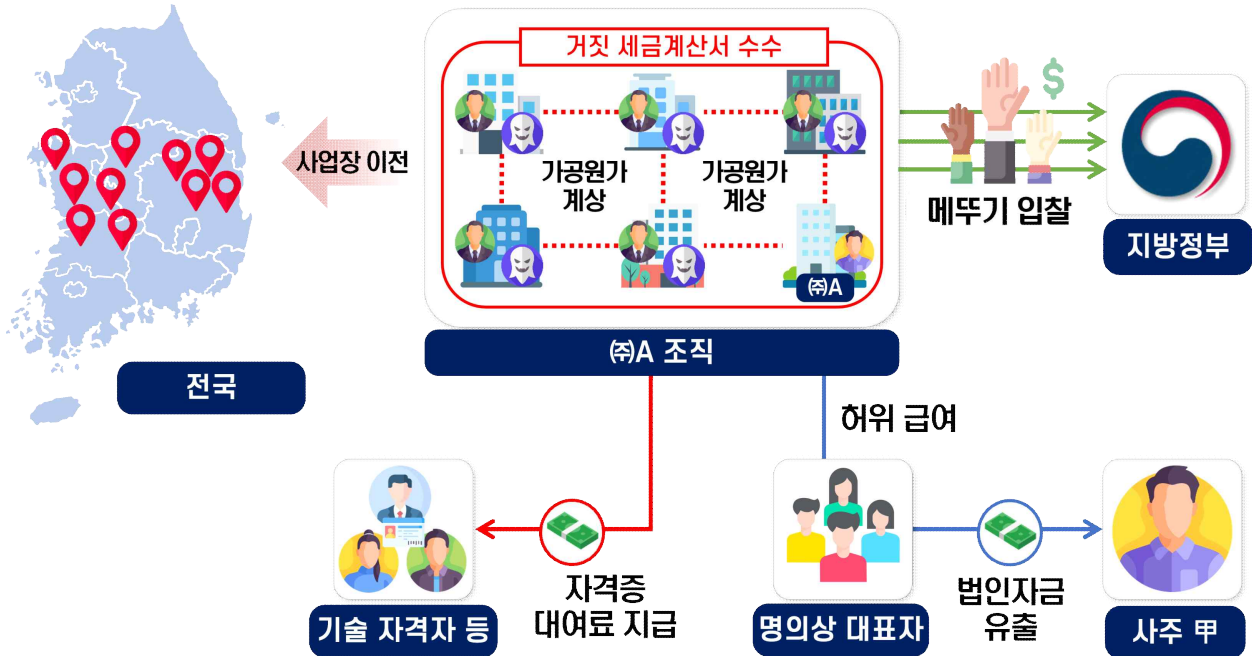
- 이들은 조사대상기간 중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6,500여 회나 입찰에 참여하여, 260여 회, 약 230억 원을 낙찰받았다.
- 또한 지역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입찰에 참여하였는데,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 사업장을 이전하기도 하였다.

□ 조사대상업체들의 전체 탈루혐의금액은 약 700억 원으로, 이들의 세무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유령업체 동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거짓세금계산서 거래다.
 - 입찰 시 필요한 사업실적 기준 충족 등의 목적으로 유령업체들과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를 일으키는가 하면,
 - 낙찰자(유령업체)와 실제 용역 제공자(실사업자)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고, 소득금액을 분산하였다.
- 둘째, 자격증 대여료 등 불법비용 계상이다.
 - 산림사업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,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 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.
- 셋째, 소득을 축소하기 위한 가공원가 계상이다.
 - 유령업체 대표들은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사주의 친인척, 일용근로자 등이므로, 실제 사주가 이들에 대한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,
 - 소규모 업체의 경우 신고내용 검증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점을 이용하여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‘잡비’, ‘기타 비용’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.

□ 주요 착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[착수사례 1]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,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,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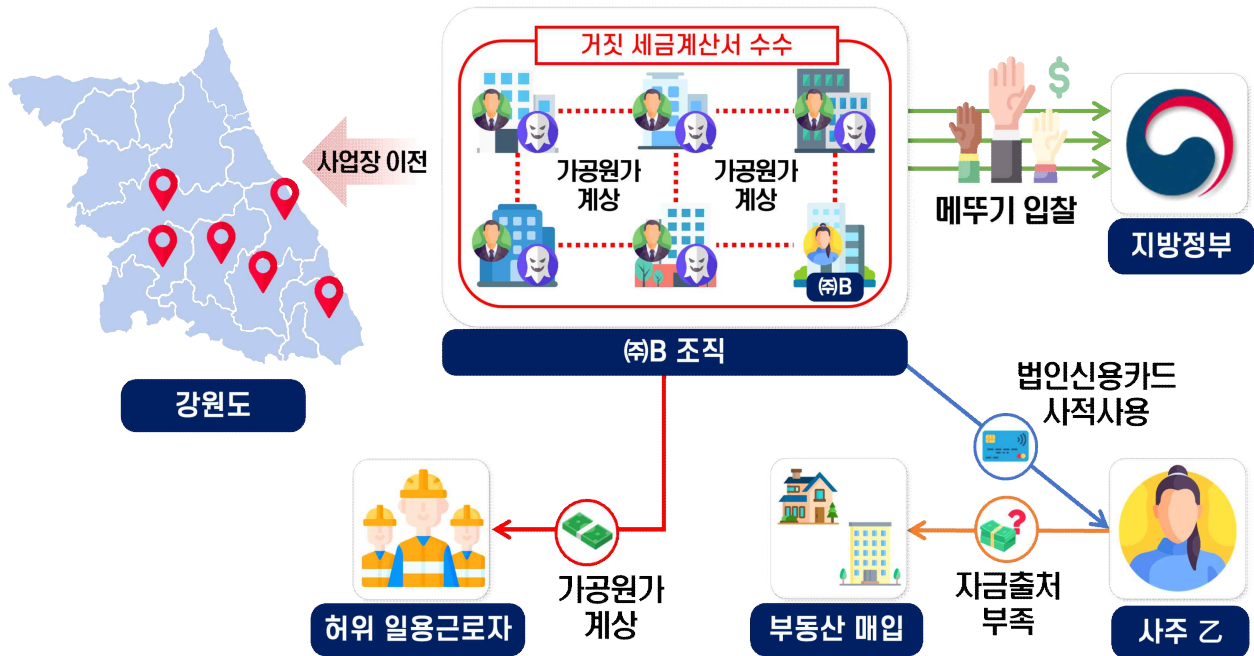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탈루혐의

- 甲은 경상북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, (주)A 외 5개 업체 (이하 ‘(주)A 조직’)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3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
- 사업실적 요건 충족을 위해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(주)A 조직 업체 간에 수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
- 또한 실제 근무하지 하지 않은 甲의 배우자 등 (주)A 조직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급여 형태로 법인자금 약 10억 원을 유출
- 산림경영기술자격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우회 지급
-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

□ 조사방향

- 甲과 (주)A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, 법인자금 유출, 불법비용 계상 등에 대해 엄정 조사

[착수사례 2]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



□ **주요 탈루혐의**

- 乙은 강원도 일대에서 산림사업을 영위하는 자로, ㈜B 외 5개 업체 (이하 '㈜B 조직')를 동원해 수시로 사업장을 이전해가며 약 200회 가량 산불피해복구 공사에 입찰하여 약 20회 낙찰
 - 사업실적 요건 충족 등의 목적으로 서로 용역거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㈜B 조직 업체 간에 약 20억 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
 - 일용근로자의 근무지와 근로기간을 중복하여 임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약 30억 원의 가공원가 계상
 - 乙은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수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
- 乙의 배우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이 약 20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, 자금출처 불분명

□ **조사방향**

- 乙과 ㈜B 조직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, 가공원가 계상 및 乙 배우자의 자금출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

- 국세청은 엄정한 조사로 공공계약 입찰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‘산불 유명업체’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계획이다.
-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, 계좌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, 부당이익을 유출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.
 - 또한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행위가 수반되는 만큼, 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,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조사국 조사2과	책임자	과 장	장성기 (044-204-3601)
		담당자	사무관	손태빈 (044-204-3602)
		담당자	서기관	주인규 (044-204-3612)
		담당자	사무관	김치호 (044-204-3617)
<협조>	조사분석과	책임자	과 장	김영하 (044-204-3751)
		담당자	사무관	남중화 (044-204-3752)